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감사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담당 : 최재혁 간사010-4740-9143, 안진걸 협동처장019-279-4251)
제 목 땅콩리턴 관련 국토부의 문제점 감사하지 않겠다는 감사원 비판
날 짜 2015. 2. 25. (각종 별첨자료 포함 총 31쪽/보도자료는 3쪽)

보 도 자 료

‘땅콩회항 부실 조사한 국토부’ 감사하지 않겠다는 감사원 국토부가 자체 조사했고, 여건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 명백한 봐주기 조사, 일상적인 유착·결탁 의혹도 모두 외면한 감사원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에 이어 감사원의 국토부 봐주기

1. 감사원이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http://goo.gl/R2zK6F> 별첨자료2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 참고)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24(화) 참여연대에 통지문 도착) 참여연대가 지난 2014.12.23. 청구한 것으로, 감사원은 ①‘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②‘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별첨자료1 감사원의 답변공문 참고)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및 반공익적·부당 행정행위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모두 외면해버린 것으로, 이번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를 명백하게 ‘봐주기’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를 조사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①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위 ②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③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등 크게 3가지 점을 문제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아래 <표1> 감사청구 요약 참조)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내용과 그 결과가 너무나 부실했고, 그 문제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도 역시 매우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자체 감사를 통해,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조직적 잘못을, 부처 간의 혼선, 한 공무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직원의 미숙한 판단, 매뉴얼의 부재 등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



했는데,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었고, 이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의 총체적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표1> 감사청구 주요내용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것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의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3. 김상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소사구)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별첨자료3)’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램프리턴과 관련한 부실조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총체적인 부실 조사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에 대해, 부처 간의 혼선, 국토교통부 직원의 경솔함,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상당히 축소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한 서류를 수령하는 것 등은 부처 간의 혼선, 직원의 경솔함과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종합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평상시·유사시의 깊은 유착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했어야 했다.



4.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결과 자료만 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한 회사와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데, 감사원이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감사를 거부한 이유로 제시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총체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사안이었다. 감사원의 역할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제대로 감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행태 전반이,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까지도 명백히 부당·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건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관계, 유착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술하게 드러났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도 조치하지도 않았었다. 이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 이번엔 누가 보기에든 감사원이 국토교통부를 명백히 봐준 것이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불법·부당·반공익적 행위에 대한 최고·최종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 끝.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2. 참여연대의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3.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별첨자료1>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붙임]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국토교통부 조사 관련)

청 구 이 유	조 사 확 인 결 과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램프리턴 관련 조사를 하면서 (1) 관련 승객이나 승무원의 연락처 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켰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되자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2) 또한,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등 특정 항공사(또는 대학) 출신으로 쏠림현상 발생 및 이에 따라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	(1)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관련하여 - 위 감사청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 12. 16. 발표한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위법·부당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같은 해 12. 17. 부터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므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부적절 관련하여 -이 건 제한된 국내 항공사 여건상 특정 항공사와 특정대학 출신으로 인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위 청구사항을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2> 참여연대의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1. 감사청구의 배경

지난 12월 5일 새벽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최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 과 제대로 된 규정과 시스템 마련,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일들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12/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인 직원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강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관이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해 전형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자 비록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검찰에 일부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잘못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려는 검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 정부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직무유기성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행위, 평상시 유착의 의심되는 행위들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상당 시간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사건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 이 사건 관련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발표하여 사무장과 기장에게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준 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소속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4. 결론

이와 같이,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또 국토



부의 항공사 및 항공사고 관련 관리·감독·조사 관련 행정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 같은 문제점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한 국토부의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및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다시는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교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1. 감사 청구 이유

- 국토교통부는 12/16일(화) 오전,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12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국토부 조사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최대 피해자인 사무장은 국토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무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 관련 진상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고, 12월 12일에 검찰의 1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2월 15일 저녁에도 검찰의 2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도 성실하게 협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피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국토부의 지난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특히, △국토부 조사 요청 연락이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온 점 △국토부 조사관 중 일부가 대한항공 출신인 점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이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의 조사 과정은 위법·부당함과 동시에, 공익과 상식에도 현저히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로 그칠 일이 아니라 권위있는 외부의 상급 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2. 상세 감사 청구 사유

1)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전화가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간 것부터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전화 번호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매우 무능한 직무유기에 속하거나 또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 대한항공은 1등석 승객의 전화번호를 국토부에 알려주기도 했고(별첨 언론보도 참조), 특히 승무원들의 전화번호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12월 6~8일 사이에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승무원들에 대해 미리 허위진술을 할 것을 회유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의 조사 사실을 대한항공 간부에게 알려주고, 연락까지 하게 했다는 것은 아예 대한항공 측이 피해자들에 대해 대놓고 회유압박할 시간과 계기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국토부 조사 사실과 조사 일시를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국토부에서 진실을, 진상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대한항공과 그 간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 시,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출신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사관 6인중 2인이 대한항공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항공 사고가 아니라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내 폭력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긴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치했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 역시 거짓이나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비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로 조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을 배치했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엉뚱한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 조사를 받을 때, 회사 측의 주요 임원이 배석하는 황당한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고, 이들이 개별적인 허위 진술 압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배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국토부가 왜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키게 된 것인지 감사원이 엄정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나중에 국토부는 여00 상무(허위진술 압박의 총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와 피해자(사무장)만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여00 상무를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상대로 30분 정도 더 조사를 했는데, 밖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



던 데다가, 그 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 여00 상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 국토부 조사실이 방음이 안 돼,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국토부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또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국토부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일정한 ‘내통’을 하고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6) 또,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누구나 알 수 있고, 복수의 믿을만한 증언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은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은 사실상 ‘난동’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실제로 피해 사무장, 1등석 승객, 일반석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기내 폭행, 폭력 행위를 검찰의 공으로 떠넘긴 것은 조사 결과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나아가, 이 사건의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국토부의 문제 많았던 조사 과정의 피해자인 박00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점과, 조종사의 책임을 언급하고 일정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사무장과 기장이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국토부의 황당하고 부당한 조사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사과도 없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의 행태입니다. 그래놓고도, 조사 결과에, 절대적인 피해자인 사무장이 마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책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조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의 강한 압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렇게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국토부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결국, 최초에 참여연대, 이후 검찰, 그리고 언론에 차례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하고 공개한 것은 공익적 제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보호와 격려의 대상이 될 일이지 단죄와 추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조사 결과에 담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인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조사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항공감독·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별첨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이번에 감사원이 매우 자세히 감사를 진행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구조적 개선을 지적해야할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끝.

<별첨자료3>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2014. 12.

I. 감사개요	1
II. 감사결과	1
1. 조사 관련부서 초기대응 미흡	1
2.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4
3.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8
4.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11
5.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3
III. 조치계획	14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2014. 12. 5. 14:53(현지시간 00:53)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결과

I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및 인원 : 2014. 12. 17. ~ 12. 26.,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대상 :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자

* 승무원, 기장 등 피조사자도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여부 확인을 위해 면담

☐ 감사중점

- 사고 대응 관련부서의 초기 대응 상황 대처 적절성 여부
-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
- 조사관의 대한항공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 조사과정에서의 상급자 지휘·감독 책임

II

감사 결과



◆ (총평)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

1. 조사 관련부서(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 초기 대응 미흡

동 사건은 일반적인 항공사고와 다른 바 관련부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함에도 부서간 역할 분담, 초기 지침 수립 등에 한계

- (사건 정보부재) '14.12.5. 최초 사건발생 이후 '14.12.8. 언론보도(06:03경 세계일보 인터넷판 최초 보도) 이후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사전 초기대응 기회 상실
- (초기대응 혼선) '14.12.8. 사건 인지 이후 관련 부서인 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는 주관 부서, 조사단 편성, 조사일정, 조사대상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착수 되도록 했어야 하나,
 -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간 후속조치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 * 운항안전과(항공안전정책관)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임으로 항공보안과 소관으로, 항공보안과(항공정책관)는 항공기 회항, 지연 등 임으로 운항안전과 소관 주장
 -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간 협의를 거쳐 항공보안과에서 12:02경 장관 메모보고 및 대면보고(항공정책관), 14:05경 대변인실에 보도참고자료를 송부(14:33 배포)하였으나,



- 이후 양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건 사고조사 주관부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
 - * 항공보안과장은 12.8 최초 장관보고와 국회대응은 항공보안과가 하되 운항안전과장이 이미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여 합동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 주장
 - * 운항안전과장은 기내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반이므로 항공보안과 주관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소관 직 상급자(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동 상황을 보고하여 조속히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나,
 - 동 절차 없이 사고 조사가 진행되게 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초래
 - 항공정책관은 양 과간 업무 한계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로서 관련 부서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할 책임이 있음
 - 항공안전정책관은 초기에 운항안전과장으로부터 기내 소란 행위로서 항공정책국 항공보안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받았고 향후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 ☐ (컨트롤 타워 부재) 소관 분야 조사(항공보안과: 기내 소란행위, 운항안전과: Ramp Return의 적정성)에 집중하면서 통일된 조사계

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지침도 조사관들에게 지시 못함

(1) 관련 과, 조사관 모두 통일된 조사계획 부재 상태에서
조사 진행

- (항공보안과) 이미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지침없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하여금 사고조사 지시 공문* 발송(12.8 13:32경)

* “대한항공 승무원 하기 관련 사실조사 지시”(과장 전결) : 기내 폭언, 사무장 하기행위 및 항공기 램프리턴 상황 등 관련 세부사실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

- (운항안전과) 기내 승객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규사항이므로 항공보안과에서 총괄한다는 인식 하에 별도 지침없이 항공안전감독관 2명 조사 투입만 지시

* 조사에 투입된 항공안전감독관은 본인들이 주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닌 항공보안감독관의 조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조사에 임했다고 진술

- (조사관(항공보안감독관, 항공안전감독관)) 구체적인 조사방향 및 조사방법 등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했으며, 이후 조사 주관을 놓고 혼선 초래(조사결과 자료도 개별적으로 송부)

(2) 컨트롤 타워 부재는 조사과정에서 문제점 유발

- 일일보고 등은 단일하게 모든 상황이 종합 정리되어 보고되어



야 하나, 조사관들이 각각의 소속 부서인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에 소관 분야 위주로 별도로 보고하여 조사의 효과성 반감

- 이에 대해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사결과보고가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주요 보고서 작성시 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 조사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

* 특히, 항공안전정책관은 매일 조사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 진술

- 그러나 사건 초기 단일보고서 부재, 분야별 보고는 박○○ 사무장 조사시 여○○ 상무 배석관련 거짓브리핑 등 논란 단초 제공

□ (대응매뉴얼 부재) 금번 사건과 같이 기내소란행위(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와 램프리턴(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이 혼합된 사건에 대한 대응 절차,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업무조정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해당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전개

2.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례대로 안이하게 조사를 진행, 조사의 공정성 훼손 야기



《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조사대상자 호출 》

□ 12.8 조사관 김○○은 출근 후 운항안전과장 이○○로부터 전화로 이 건 조사 지시를 받고 시간 불상경에 대한항공 객실안전팀 부장허○○과, 10:24경에는 객실담당 상무인 여○○과 통화*하였고,

* 김○○은 이 건 사건 발생에 대한 상황파악 등을 위해 통화하였다고 주장

○ 이후 김○○은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같은 항공안전감독관인 최○○과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최○○이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팀장 이○○에게 전화로 당일 박○○ 사무장과 기장 등 조사대상자(3명)가 항공안전감독관 조사실(김포공항 소재 舊 사조위 청사)로 출석하도록 요청

* 조사대상자에 대해 김○○은 운항안전과 및 다른 조사관들과 협의하여 결정 했다고 주장하나, 운항안전과장은 조사관들이 선정했으며, 조사관 최○○은 객실승무원은 김○○이 선정했고, 이○○은 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고 진술

○ 이후에도 박○○ 사무장의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회사관계자를 통해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자가 아닌 회사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논란 야기

○ 최○○은 조사대상자 호출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별도로 본부의 지침이 없었으며 안전분야 점검 시 대관업무 부서에 연락하는 통상적인 관행*을 따랐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



- * 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 시 통상적으로 조사개시 통보를 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한다고 진술

□ 그러나, 조사대상자 호출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관행이라 하더라도 다수 사실관계자 이해가 상충되는 조사인 점을 감안, 신중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간과하였음

- 특히, 사건 발생당시 관계자가 대한항공의 부사장, 기장, 사무장, 승무원, 승객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항공사로부터 인적사항, 연락처만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 통상의 사건과 같이 항공사와 문제 승객의 구조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부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사무장 등을 호출함으로써 부실조사라는 의혹 초래

《 박○○ 사무장 조사 시 사측 관계자인 상무 배석 》

□ 12.8 박○○ 사무장 조사 시작부터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가 동의나 타당한 이유없이 배석하였는데도 조사관들이 퇴실지시를 하지 않다가, 19분여가 지난 후 뒤늦게 퇴실 지시

- * 12.8 박○○ 사무장 등 3명 출석 시 대한항공 서○○ 전무(운항담당), 여○○ 상무(객실담당), 이○○ 팀장, 김○○ 팀장이 동행
- * 여○○ 상무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관들(누군지는 모름)이 조사대상자도 아닌데 배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비스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배석을 했습니다”라고 발언(최○○, 이○○ 진술)

- * 이 건 관련 박○○ 사무장 외 기장, 승무원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기장 및 승무원들의 조사 시 여○○ 상무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진술

☐ 여○○ 상무는 약 19분여 동안 동석하며, 박○○ 사무장의 답변 과정 중 총 12회 발언하였고, 이 중 5회*정도 적극 개입하여 발언

- * 기타 여○○ 상무가 박○○ 사무장 대신 발언(일반적인 사항) 5회, 박○○ 사무장의 답변에 대한 단순 반복 발언 2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조사관들은 모두 여○○ 상무로부터 박○○ 사무장 조사 시 배석 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

- 김○○은 상무 배석 시 사무장의 조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질의응답이 없었고, 특별히 문제될 사안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
- 최○○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 업무 영역이 아닌 객실서비스 관련 내용이며, 주관부서인 ‘항공보안과 감독관의 사전 양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나쳤다고 진술
- 최○○ 및 이○○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조사를 주도하였고 특별히 상무 배석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



- *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침서에서는 이해 상대방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자유스럽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수사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부는 이러한 매뉴얼은 없음
-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이해가 상반된 회사측 상무가 특별한 이유없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아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사건 조사의 기본을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불공정 조사 논란 초래
- * 12.9 승무원 조사시 대기실에 피조사들과 함께 있도록 방치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

《 확인서를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제출 요청 》

- 김○○은 12.8 19:30경 박○○ 사무장 조사의 끝난 후 확인서를 받았으나, 박○○ 사무장과 여○○ 상무에게 시간대별로 재작성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 익일 12.9 09:48경 박○○ 사무장이 자필로 작성한 최종 확인서를 국내승원팀장 김○○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음
- 12.9 14:04경에는 김○○ 팀장이 “사무장 경위서”^{*}를 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14:38경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무장 경위서”를 박○○ 사무장이 본인 이메일로 김○○에게 재송부^{**}
- * 시간대별 처리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써 ‘확인서’에 비해 대체로 구체적임



** 12.9 14:27 박○○ 사무장이 김○○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아 김○○에게
재송부

□ 이에대해 김○○은 재작성된 최종 확인서와 당초 확인서와
는 내용상으로 보아 큰 차이는 없고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
어 있을 뿐이며,

○ “사무장 경위서”를 요청한 바가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확인서”는 동 “사무장 경위서”인 것으로 생각된
다고 주장

* 박○○ 사무장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수차례 “확인서” 수정 요청을 받았
다고 보도

□ 조사결과, 당초 확인서와 최종 확인서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론 보도 내용이 “사무장 경위서”을 전
제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박○○ 사무장의 확인서 수정을 당사자 외 상무에게도
요구하고, 최종 확인서를 본인이 아닌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
는 등 부적절한 조사절차로 인해 불공정 조사의혹 촉발

○ 관련 조사관들은 통상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만
큼 조사과정에서 일말의 오해를 유발할 행위는 하지 않았
어야 함

3.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조사 핵심 기초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조사 초기 국토부의 조사의지 부족 등 부실조사 초래

《 주요 조사자료 확보 지연 》

□ 이 건 조사의 핵심 기초자료로써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할 항공기와 관제탑 간 교신내용 등*을 사건 당사자인 대한항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건 발생 8일이 경과한 12.16까지도 미확보

* 이동지역 관제 교신 및 동영상(뉴욕공항공사), 관제탑 교신내용(美 FAA)

** '14.12.9 조사관들이 구두로, 항공보안과에서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자료제출 요청, '14.12.11 및 '14.12.16 운항안전과에서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자료제출 독촉

○ 이후, 뒤늦게 12.16 美대사관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12.18 외교부를 통해 관련국 협조요청을 하여, 사건보도 이후 11일이 지난 이후인 12.19에서야 교신내용 등 관련자료 확보

→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단초 제공

□ 운항안전과장은 12.19 13:00경 뉴욕공항공사로부터 대한항공을 통해 전달된 주기장 동영상 자료를 조사관 최○○이 USB로 받아 즉시 검찰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동 자료는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 12.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 질의 답변과정



에서 동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없다”라고 답변*

- * 운항안전과장은 12.19 소속 직원인 김○○주무관으로부터 최○○ 조사관이 검찰에 동영상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우리부가 동 자료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착오

《 여객기 탑승객 명단 확보 지연 》

□ 12.9 최○○은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조사팀장 이○○에게 탑승객 명단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이에따라 12.11 16:17경 운항안전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요구하였고, 12.15 14:32경 안전보안팀 차장 손○○이 최○○에게 탑승객 명단(14명)을 이메일로 송부

- 그러나, 최○○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12.16 10:08에 확인

- * 최○○은 12.15 당일 여○○ 상무와 서○○ 전무의 조사 준비 등으로 대한항공에서 보낸 매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

《 주요 자료 활용 미흡 》

□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은 조사초기 이 건 대한항공 여객기에 우리부 직원이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기에 이 건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지 않음

- 운항안전과장은 12.10경 모 기자로부터 우리부 직원(2명)이 출장 귀국 차 탑승한 사실을 문의받아 인지하고, 항공정



책관 및 항공보안과장에게 동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 항공보안과장은 일반석 맨 앞줄에 탑승했던 해외건설과 직원(행정7 김○○)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가 간단하게 작성*된 자료(A4 반페이지 분량)를 제출받음(12.10경)

* “출발시간 즈음 퍼스트 석에서 고성 시작, 퍼스트석 앞좌석에 탑승한 여자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야 너 나가’ 등 소리를 지름, 잠시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 등

- 그러나, 이후 동 우리부 직원 탑승사실은 조사반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이를 관련자 조사에는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 동 직원으로부터 자필로 재작성되고 서명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16 검찰에 탑승객 진술자료로 제출하고, 당일 보도자료(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에 탑승객 진술내용으로 인용

* 운항안전과장, 항공보안과장은 우리부 직원 탑승사실을 인지한 사실을 조사관들에게 알려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들은 개략적인 직원 탑승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

→ 조사관이 우리부 직원의 진술내용을 알았다면 12.11이후 조사 활용 가능

→ 조기에 기내 ‘고성’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조사자의 적절한 역할 분담 미흡 》



□ 박○○ 사무장 등 조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경과와 내용에 따라 주된 질문자, 보충 질문자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

- 조사관 5명이 개별 질문을 하고,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태도도 보여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조사 분위기 조성 미흡

4.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일부 조사관이 조사대상 업체의 임원과 조사기간 중 수차례 휴대폰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

《 조사관 김○○의 부적절한 유착 》

□ 이 건 조사의 조사관 김○○은 사무장 등에게 자사 부사장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음

* 대학 및 대한항공 입사 선배로서 오랫동안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

- 김○○의 휴대폰 및 본인 진술 등에 따른 통화내역 확인 결과, 12.7~12.14 기간* 중에 총 38회(음성 28회, 문자 10회)에 걸쳐 객실담당 상무 여○○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12.8 조사 시작, 12.16 검찰 고발장 제출



○ 이 중 음성 5회의 통화기록이 삭제되었으며, 문자 2회는 송수신 목록 및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문자 8회는 송수신 목록만 남아 있고 내용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해 김○○은 이 건 조사를 위한 사실 및 상황확인 등을 위해 전화통화를 한 것이었으며, 조사반의 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김○○은 여○○ 상무 외에 객실안전팀 허○ 부장과 통화(15회)한 사실도 있으나, 항공기 안전규정 및 절차, 회사 조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김○○은 사무장, 승무원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도 아니고 사측 관계자인 상무에게 문의*함으로써, 여운진 상무에게 조사반의 조사 방향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함

* (본인진술 주장) “승무원들이 뉴욕에서 얼마나 체류를 했는가” “사무장 박○○이 자발적으로 하기한게 사실인가” “박○○의 태블릿피시에 암호가 걸려 있었는가”(12.9), “승무원 정○○가 기내방송을 한 위치가 이층 맞냐”(12.10) 등

○ 또한, 여○○ 상무에 대한 별도 조사(12.15)가 예상되었는데도 김○○이 주장하는 조사 차원의 통상의 범주를 넘어 통화 횟수가 많은 점을 볼 때 부적절한 청탁성 통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이에 국토교통부 특별감사반은 조사관 김○○에 대하여 12.23.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12.26 검찰에서는 김○○이 조사결과를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하였음

《 김○○ 외 다른 조사관 및 관련직원 통화현황 》

◇ 최○○은 여○○ 상무와의 통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급 직원인 안전보안실 직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 조사대상자 호출 연락, 자료요청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 최○○은 여○○ 상무와는 이 건 조사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

** 안전보안실 조사팀장 이○○(18회), 차장 손○○(10회), 기타 직원(10회)과 통화

○ 안○○는 이 건 관련 대한항공 직원과의 통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최○○은 이 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임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이○○은 안전보안실 직원에게 1회* 통화한 사실이 있음

* 12.11 안전보안실 직원에게 우리부 직원 탑승 관련하여 문의

◇ 항공정책관 이○○와 항공보안과장 이○○는 이 건 조사기간 중 대한항공 임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항공안전정책관 권○○은 1회*, 운항안전과장 이○○는 6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화로 진술함

* 12.12 김○○ 전무에게 대한항공 회장의 기자회견 여부 등 문의

** 128 문○○ 전무, 이○○ 상무에게 사건발생 확인차, 129 이○○ 상무에게 장관보고 준비 관련 문의, 12.10 이○○ 상무에게 임원 4명 출석요청(승무원 진술 관여 금지 지시), 문○○ 전무에게 조○○ 부사장 출석요청, 12.11 문○○ 전무에게 부사장 조속 출석 요청

5.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신중하지 못한 조사절차 상의 문제점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 논란 야기

□ (조사결과 처리 미숙) 12.9 기장 및 부기장 조사 시에는 조사관이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한 이후



실제로는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녹취록을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

* 검찰 조사 중 본인들이 조사받은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검찰에 송부된 사실에 국토부 조사 과정이 허술하다면서 불만 표시

○ 또한 항공보안과에서 검찰로 고발장을 송부(12.16)하면서 첨부물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등 부실하게 작성

* 검찰에 공식 고발을 요청하는 문건은 좀더 신중 하게 작성했어야 함

□ (포토라인 및 화장실) “조현아 前 부사장 출석시 사조위 청사 입구에 포토라인 설정, 대한항공의 요구로 화장실 청소 논란” 관련

⇒ 포토라인 구역은 한국공항공사 소유 토지로서 대한항공이 포토라인 설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실도 없음

* 건물은 서울지방항공청 소유로서 1층은 한국공항공사 창고, 2층은 舊 사조위 사무실로서 일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사용, 3층은 항공교육기관 입주

⇒ 화장실 청소 건은 청사관리소장(사조위에서 건물관리용역)에 따르면 前 부사장 출석 전에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조사실 보안문 밖의 화장실 청소를 요청하여 가보니 지저분해서 본인이 청소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우리부 직원 개입 정황은 확인 안됨

□ (조사실 개방여부) “12.8 박○○ 사무장 조사시 조사실 문을



열어 놓아 밖에서 조사내용이 다 들렸다는 논란”관련

⇒ 조사관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현장 확인결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발언 내용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음

□ (조사 중 사적접촉) “박○○ 사무장이 나간 후 조사관이 여○○ 상무를 불러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는 논란”관련

⇒ 일부 조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박○○ 사무장 조사 완료이후 여○○ 상무가 조사실에 들어온 기억은 없으며,

다만, 모든 조사완료 후 김○○, 최○○과 흡연 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복도에서 대한항공 직원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

Ⅲ

조치계획

□ 이 건 조사관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로서 총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항공정책관 이○○에 대하여 “경고” 조치

- 최초 이 건 사건 인지 시 관련부서간 역할 분담, 조사 대상 및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지 못한 책임
-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 등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관 구성 변경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 등



- ☐ 이 건 조사관련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 조사 등을 초래한 항공안전정책관 권○○에 대하여 “경고” 조치

- 이 건 조사관련,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유발한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평소 조사 방법 및 절차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책임

- ☐ 이 건 조사를 태만히 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장 이○○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보안과장 이○○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

- 이 건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사관에 대해 조사의 중립성 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이○○)
- 최초 사건 인지 시 상급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한 후, 주관부서 결정, 조사방법 등의 조사계획 확정 후 조사반에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 하여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했어야 할 책임(이○○, 이○○)
- 조사보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조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이○○)
- 이 건 조사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브리핑 (12.16)을 하여 조사 시 대한항공 임원 동석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 당사자도 아닌 사측 관계자인 임원과의 연락 등을 통해 동 임원이 조사 방향 및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호출, 탑승객 명단 지연 확인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에 대하여 “징계” 조치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 서울지방 항공청 항공주사 이○○에 대하여 각각 “경고” 조치

□ 이 건 조사관으로 투입되었으나 조사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안○○, 항공보안과 항공사무관 이○○에 대하여는 “불문” 조치함